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지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32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9.

발 의 자: 박지혜·조인철·허 영

이건대 • 위성곤 • 민형배

이소영 · 정준호 · 김원이

김영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에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 관리·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 등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근거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1 제24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73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1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4.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